

FTA, 수출전선에 무지개를 띄우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E사는 자동차 내외장용 플라스틱 코팅 도료(Paint) 전문제조업체로 국내 자동차회사에 내수판매와 미국, EU, 인도, 중국 등 해외로 수출
※ 2009년도 500만불 수출의 탑, 2010년도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수출물품(Paint, HS 제3208호)은 자동차 내·외부의 범퍼, 핸들, 휠커버, 라디에이터 그릴, 쉐루프, 센터 콘솔, 글로브 박스, 오디오판넬, 에어백,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코팅재로서 첨단 기술 적용 제품
※ 2012.3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 한-EU, 한-인도 CEPA 등 활용

2. FTA 활용전 상황

- 동사는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FTA 협상 및 발효국인 인도, 체코, 중국, 미국 등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현지화 전략 추진
- 2011년 FTA 체결국 수출금액은 전체 수출액의 55%(850만불)를 차지하여 FTA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
- FTA 협정별 현황

수출물품	적용협정	기본세율(%)	협정세율(%)
3208.10	한-미	3.7	0
	한-EU	6.5	0
	한-인도	12.5	7.8
3208.20	한-미	3.6	0
	한-EU	6.5	0
	한-인도	12.5	7.8
3208.90	한-미	3.2	0
	한-EU	6.5	0
	한-인도	12.5	5

- 한-미, 한-EU는 관세 즉시철폐 품목으로 3.2%~6.5% 관세 혜택

3. 장애 요소

- 한-미 FTA 활용 장애요인
 -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 미제출 ⇒ 원산지결정기준(CC) 미충족
 - 인적 물적 비용 발생 ⇒ 소요 원재료 전체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미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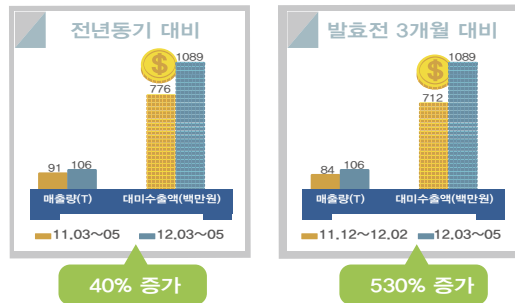
4. 극복 방안

- 한-미 FTA 활용 극복과정 : FTA활용 Total Consulting 실시
 - 원산지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재료관리 단순화(인력/비용 절감)
 - 미국산 원재료를 수입하는 국내 협력업체를 설득하여 미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하여 누적기준을 적용(세번변경기준 충족)

한-미 FTA 협정의 도료(Paint) 원산지 결정기준

HS	품목	원산지 결정기준
3208,10	Based on polyester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C)
3208,20	Based on acrylic or vinyl polymer	
3208,90	other	

5. 활용 효과



- 수출증가에 따른 2012년도 연간 관세혜택 예상액은 약 6.6억원으로 추정

6. 시사점

- 협력업체와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국인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변경하여 FTA를 활용한 사례